

「제규정작성 및 관리 규정」 개정문

개정 2022. 5. 16. · 시행 2022. 5. 1.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제규정작성 및 관리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관련부서) 규정류 관리업무의 관련부서는 전부서와 규정심의위원회가 있으며,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.

1. 전부서

가. 해당업무 제 규정 작성 및 상정

나. 해당업무 제 규정 준수, 검토 및 시정조치

다. 배포된 제 규정의 최신 유효본 유지

2. 규정심의위원회는 규정안의 내용 및 체계를 검토하고, 행정위원회 및 교무위원회는 규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규정을 심의·결의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검토자 및 승인권자) 제 규정의 검토자 및 승인권자는 다음 표와 같다.

구 분

검 토 자

승인권자

비고

품 질 매 뉴 얼

경영대리인(기획조정실장)

행정위원회 또는

교무위원회

규 정

부서장/경영대리인

지 침

부서장/해당위원장

업 무 편 램

부서 과장(팀장)

부 서 장

(표) 제 규정의 검토자 및 승인권자

(표) 제 규정의 검토자 및 승인권자

제13조 중 "지침"을 "규정"으로 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(제 개정시기) 제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었을 경우 제·개정 및 폐지한다.

1. 조직이 개편된 경우

2. 새로운 업무를 시행할 경우

3. 관계법령의 변경으로 규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

4. 시정 및 예방조치 또는 개선활동의 결과로 인하여 제정 및 개.폐가 필요한 경우

5. 기타 필요한 경우

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지침과 시행세칙, 학칙은 담당자가 작성하여 부서장 및 해당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행정위원회 또는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업무편람은 담당자가 작성하여 부서팀장의 검토를 거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0조(검토 및 조정) ①주관부서장은 접수된 규정안에 대하여 규정심의위원회(신설)를 소집 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. 단, 조직 개편 및 보직명 변경, 단순 오탈자 수정에 대한 개정은 관련 회의록이나 주관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해당 규정을 개정 및 폐지할 수 있다.

②주관부서장은 검토를 거친 규정안에 대하여 작성부서장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③작성부서장은 검토결과를 정리한 규정안을 행정위원회 또는 교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·결의를 받아야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"①작성부서장은 행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규정안에 대하여 행정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"를 "①작성부서장은 행정위원회 또는 교무위원회 결의를 거친 규정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 또는 교무위원회 결의 결과를 첨부하여"로 하고, "한다."를 "한다. (개정 2022-05-16)"로 한다.

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5조(관련규정) 이 규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.

1. 문서관리규정
2. 해당위원회규정
3. 행정위원회 규정
4. 서식관리규정
5. 파일링 관리규정
6. 구성심의위원회 규정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